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2026년도~2028년도) 동의안

제출자 : 평창군수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2026년도~2028년도) 동의안

의 안 번 호	463

제안연월일 : 2025. 8. 25.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급식의 안전성과 영양 균형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현재(2025년)까지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6년부터「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를 추가 근거로 하여,「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제6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위탁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2호 및 「2025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위탁계획) 및 제7조(의회의 동의)

○ **추진 필요성**

- 법적 근거에 따른 지속적 운영 필요(어린이·사회복지 급식안전 관련 법령 준수)
- 2014년부터의 위탁 경험을 통한 연속성 확보 및 급식소 관리 공백 방지
- 전문기관 위탁으로 소규모 급식소 위생·영양 관리 강화, 식중독 예방 및 지역 사회 건강 증진

다. 현 위탁운영 현황

○ **위탁사무명:**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3년)

○ **소 재 지:** 평창읍 종부로 61(평창군사회복지센터, 2층)

○ **위탁기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비영리 학교법인)

○ **근무인원:** 3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1) ※ 팀장: 위생사, 팀원: 영양사

○ **사업규모:** 등록 어린이·청소년 급식소 21개소

- 어린이집 11, 유치원 1, 지역아동센터 3, 다함께돌봄센터 5, 청소년활동시설 1

○ **2025년 예산:** 146백만원(국비 73, 도비 29, 군비 44) ※ 국 50% 도 20% 군 30%

○ **운영실적(최근 3년)**

- 센터 운영 실적 평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평가항목: 사업운영관리, 급식소 지원, 만족도 조사
- 평가결과: 2022년 97.87점, 2023년 98.75점, 2024년 95.88점

※ 평가기준: 총 100점(급식지원 90%, 만족도 10%)

⇒ **필수 기준 충족: 3년 간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 기준 모두 충족(Pass)**

라. 민간위탁 사무 내용 및 위탁 범위

○ **위탁사무명: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위탁사무 내용**

- 소규모 급식소 발굴·등록 운영 관리 및 위생·영양·안전관리 지원
- 급식소 대상 맞춤형 위생·영양 교육 실시 및 표준 식단 개발·보급

○ **대상기관 및 범위: 등록 급식소 35개소(어린이 21, 사회복지 14)**

- 어린이급식소(21개소):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시설
- 사회복지급식소(14개소): 50인 미만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 운영여부는 국도비 확정에 따라 결정 예정(도 보건식품안전과, '25. 9월 중)

○ **위탁 운영기간: 2026. 1. 1. ~ 2028. 12. 31. (3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자격

○ **선정방식:**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기관 위탁

○ **자격요건(어린이·사회복지 급식안전 관련 법령 준수)**

-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 관련 전문성, 인력·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
  · 영양사 인력을 갖춘 식품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바. 수탁기관 지원예산 및 산출근거(국도비 확정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예산 결정)

○ **예산기준(2026년 위탁운영 계획)**

- 기준: 「2025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침(통합가이드라인)」
- 등록 급식소 35개 이상: 지원예산 2억, 직원 5명 배치(센터장 1, 팀장 1, 팀원 3)

※ 2025년 위탁운영 등록 급식소 35개 미만 1억, 직원 3명 배치(센터장 1, 팀장 1, 팀원 1)

○ **인력배치기준**

- 인력구성: 센터장, 팀장(영양사·위생사), 팀원(영양사·위생사, 식품기사), 행정팀원(컴퓨터, 회계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공개모집 통한 참여기관 모집 추진)

○ **군 직접 운영 대비 민간 전문기관 위탁의 효율성**

- 전문기관 위탁으로 전문인력 확보, 전문적 운영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의 경쟁성 확보 및 전문성 검증**

- 공개모집과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역량이 우수한 기관 선정

아. 향후 추진일정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의결, 위탁운영 기관 공모: 2025. 9.

○ 위탁 응모기관의 사업설명회 개최 및 수탁기관 심사·선정: 2025. 10.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최종 선정

○ 위탁운영 협약 체결: 2025. 11.

※ 사회복지급식 운영 등록(식생활안전관리원)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2026. 1. ~ 2028. 12. (3년)

관계법령 발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9622호, 2023.8.8.]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0호, 2024.2.27.]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22호, 2023.8.8.]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0호, 2024.2.27.]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2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급식소”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로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업무범위)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2.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
3.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어린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컨설팅 등 지원
2.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4.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5.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영양상담
6.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장애인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업무의 위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추고 어린이 또는 노인·장애인 등의 급식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곳을 말한다.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자치법규 조례 제2850호]

제6조(위탁계획)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해당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12.>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ㆍ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추진일정 및 방법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위탁계획과 동일한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4.12.>

② 군수는 재 위탁 또는 재 협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